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4. 7. 11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김진학의원의외 12인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4. 6. 27

○ 회부일자 : '94. 6. 28

다. 상정일자 : 제104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'94. 7. 8)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진학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조성을 원활히 하고,
- 용자대상사업을 댐주변사업 및 농촌도로사업으로 확대, 지방자치 완성에 따른 준비단계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,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 (안 제1조)

-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는 항 신설 (안 제3조 제3항)
- 용자 순위중 댐주변 사업과 농촌도로 사업을 추가삽입 (안 제10조)
- 위원으로 농업정책과장과 도로과장을 추가 포함시킴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노재청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 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등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의 조성과 용자지원등 공공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용자지원해 줌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기금의 순환으로 전 시군에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자립 촉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,

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

기존 용자순위에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에만 국한된 것을 댐주변사업과 농촌도로사업도 포함 수혜범위를 확대하고

용자금의 이율을 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은 년리 7%, 여타사업은 년리 8%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, 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등을 고려 3%~10%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,

기금관리위원회 위원도 농업정책과장과 도로과장을 추가 포함시키는등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문 답변 요지 : 없 음.

5. 토론 요지 : 없 음.

6. 수정안 요지 : 제 10조 제1항중 "필요한 경우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
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3%~10% 범위내에서"를
삭제하고 "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를 "도지사가 결정한다.
로 하며

등조 제1항 제1호 년리 7% 다음에 "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
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.5%~7%사이
에서 정할 수 있다"를 추가하여 현행대로 함.

7. 심사 결과 : 수정동의안 6인중 6인 찬성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
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제10조 제1항중 "필요한 경우 용자대상
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등을 고려하여
3%~10% 범위내에서"를 삭제하고 "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
를 "도시자가 결정한다"로 하며 등조 제1항 제1호 : 년리7%
다음에 "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
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.5%~7%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."를 추가
하여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.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사항 : 없 음.

10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(안)
- 조문 대비표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